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02. 27 (월) 회의시작(16:00) 이후	배포 일시	2023. 02. 27 (월)		
담당 부서	필수의료지원관 의료보장혁신과	책임자	과장	강 준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진	(044-202-2682)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2.27)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월)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 (MRI) 뇌·뇌혈관('18.10~), 두경부('19.5~), 복부·흉부·전신('19.11~), 척추('22.3~)

** (초음파) 상복부('18.4~), 하복부·비뇨기('19.2~), 응급·중환자('19.7~), 남성생식기('19.9~), 여성생식기('20.2~), 눈('20.9~), 흉부('21.4~), 심장('21.9~), 두경부('22.2~)

○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감사원 감사, '22.7)
- ▶ C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 청구

○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MRI, 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 개요
2. MRI,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방향

붙임 1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 개요

□ 일 시 : '23.02.27(월) 16:00~17:30

□ 장 소 :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보건당국) 이상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수석위원(위원장),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실장
- (의료계)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 주요 안건

- 급여기준개선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MRI,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개선 방향

□ 진행 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16:00 ~ 16:05	(5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간사
16:05 ~ 17:15	(70분)	■ 안건 논의 및 토론	참석자
17:15 ~ 17:30	(15분)	■ 마무리	위원장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

붙임 2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방향

□ 현황 및 문제점

- (자기공명영상(MRI)) 두통·어지럼에 ①선행 검사(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자기공명영상 촬영, ②환자의 개별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보다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을 최대(3개) 실시 허용

※ (②사례) A씨는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은 없었으나,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3종류의 자기공명영상 동시 촬영

- (초음파) ①수술 전 초음파 관련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일괄 실시

*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18.4~'21.3) 19,000여 건(감사원 감사, '22.7)

- ②동일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검진·촬영하는 이상 사례 확인(연간 약 7천여 건) 등

※ (사례) C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

□ 급여기준 개선 방향(예시)

- (뇌·뇌혈관 MRI) (현행) 두통·어지럼은 ①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 인정, ②최대 3촬영까지 산정 → (개선안) ①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 ②최대 2촬영으로 제한 검토
- (상복부 초음파) (현행)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 부재 → (개선안)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 (다부위 초음파) (현행)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 검사하는 사례 → (개선안)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 마련